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2022년 협동조합 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2022년 협동조합 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협동조합 종류를 알아봐요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해요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자발적 결성,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
: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결
- 기존 복지체계에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대
-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민주적 운영(1인1표)으로 조합원 만족감 제고 및 주인의식 향상

협동조합 7대원칙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4 자율과 독립
- 5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 특징을 알아봐요

협동조합 함께해요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근거법률	협동조합기본법	
	사업목적	조합원 실익 증진	
	운영방식	1인 1표	
	책임방식	유한책임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공익사업(주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단,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또는 우선출자 발행 협동조합인 경우만 의무)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 3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적용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도성격	인가제(법인격 부여)	인증제(자격 부여)*
소관부처	주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법인성격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 포함
이윤	배당불가	배당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운영중인 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이므로, 협동조합 설립 이후 인증 신청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설립지원



- 상담지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현장 밀착형 협동조합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원기관 바로연결](#) ☎ 1800-2012



- 창업지원**
 내실 있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 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운영지원



- 교육**
 인재 육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콘텐츠 제공



- 경영공시**
 협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한 운영 지원 및 신뢰성 있는
 경영공시 정보 제공



- 전문상시상담**
 분야별 전문가 상담으로 설립·운영상의 애로사항 해소와
 운영내실화 도모 [협동조합 홈페이지 > 운영안내 참고](#)

판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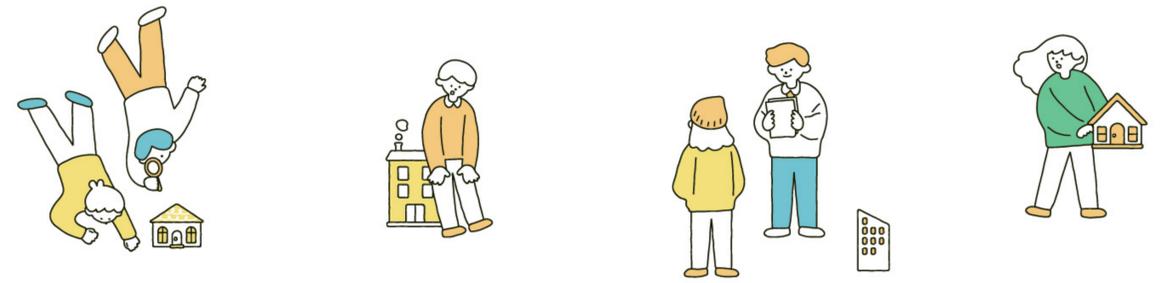
- 공공판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시장 진입 지원



- 민간판로**
 협동조합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 유통채널 진입지원 및
 협동조합간 거래 확대 지원



협동조합이 궁금해요



Q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출자금은 얼마인가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A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최저 및 최고 한도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별로 자유롭게 1좌당 금액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합회는 1개 회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협동조합 설립 신청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협동조합

A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조례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A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별 설립인가 신청 접수처(10p) 참고

Q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A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국가계약법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frac{\text{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인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인 자}}{\text{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인 유급근로자}} \times 100 \geq 30\%$$

* 협동조합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이란 무엇이고,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A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주사업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주 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유형과 판단기준은 각 조합에서 정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주사업 유형	주사업 내용 및 판단기준		
지역 사업형	판단기준 (택1)	사업비(지출)	수입·지출예산서상 전체 사업지출 중 주 사업 목적을 위한 지출이 100분의 40 이상
		서비스공급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가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택1)	인건비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100분의 40 이상
		직원 수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 직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택1)	서비스 공급 (서비스 대상 인원/시간/횟수)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인원/시간/횟수가 전체의 100분의 40 이상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 사업형	판단기준	사업비(수입)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수입이 100분의 40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공익 증진형	판단기준 (택1)	사업비(지출)	수입·지출예산서상 전체 사업지출 중 주 사업 목적을 위한 지출이 100분의 40 이상
		서비스공급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가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
혼합형	판단기준	-	위 4가지 유형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각 유형별 판단기준의 합에 따름	

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신청서류

- 1 설립 신고서 1부
- 2 정관 사본 1부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5 임원 명부 1부
- 6 사업계획서 1부
- 7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1부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서류

- 1 설립인가 신청서 1부
- 2 정관 사본 1부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5 임원명부와 임원약력(이력서) 각 1부
- 6 사업계획서 1부
- 7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1부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세부사업계획서 등)
-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본 1부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접수처

권역별 지원기관 안내

기관명	부서명(담당자)	연락처	주소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21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6층 복지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8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3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서비스국 금융소비자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6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5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	044-200-7057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실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328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350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혁신행정담당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00-5696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7층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행정안전부	지구촌새마을과	044-205-3471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지구촌새마을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0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28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8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2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604호 혁신행정담당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2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6층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218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18층 법무감사담당관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4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55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5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5층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3676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층 1407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2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정책총괄과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5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9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8층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52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서비스정책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0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9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행정법무담당관 5층

* 부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부처에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03. 18. 기준]

협동조합 관련 설립·운영·경영공시 지원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표번호: 1800-2012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033-749-3920	033-749-3900	gwse0524@naver.com
경기북부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30, 1202동 1층	070-4762-5679	070-4763-0120	pns@pns.or.kr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명서동, 일용빌딩)	055-286-7971	0303-0945-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 (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42-8002	053-267-5003	coop@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 5층 (상서동, 대구 YMCA 청소년회관)	053-942-8001	053-217-5003	dg_coopcenter@cne.or.kr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 서구 도산로370번길 22-1, 공간이음 2층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hanmail.net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 (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2층)	051-517-0270	050-4926-0028	coop@rise.or.kr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fcoop@daum.net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10층 (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22-6176	052-267-6177	ulsan@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주안동, 계림빌딩)	032-446-9492	032-421-9585	inseca@daum.net
전남	(사)전라남도 농촌종합지원센터	전남 나주시 우정로 72, 더클래스빌딩 B동 433호	061-335-0126	061-335-0124	jrsc00@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 (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coop@gmail.com
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404번길 80, 2층 (송절동)	043-267-9010	0303-0955-9001	post@cbse.kr